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수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단3006 판결 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고단3006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정경진(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2. 2. 19:15경부터 21:20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익명 채팅 어플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에게 휴대폰 F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네 친구들도 네가 걸레인 것을 아느냐. 네 친구들에게 네가 섹스에 미쳐 어릴 때부터 보지 대주고 다니는 것을 알려줄까. 학원 화장실에서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입은 사진, 브래지어를 벗은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내용의문자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21:3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만 착용한 사진 1장과 브래지어를 벗고 가슴을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2. 2. 19:15경부터 23:37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F 메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너 나랑 할래? 대달라면 다 대준다던데, 가슴 존나 크고, 자지에 환장한 년이라는 것도, 섹스에 미쳐 어릴 때부터 보지대주고 다니는 것도, 니 친구들도 너 씹걸레인거 알아? 화장실에서 가슴 까고 인증 남겨, 화장실에서 보지 벌리고 사진 3장"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사진촬영 첨부), F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 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 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괸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증,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래 집단이 중요하고 성적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소문을 퍼트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을 얻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를 보내어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삭제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고, 유포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요